

理事會 運營 規定

주식회사 멀티캠퍼스
제정 2012.10.08
개정 2022.12.29

第 1 章 總則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-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第2章 構成

제 4 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,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.

제 5 조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(감사의 출석 등)

-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이사 아닌 자의 출석)

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第 3 章 會議

제 8 조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9 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의장직무 대행의 순위에 따른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0 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24 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11 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 1. 상법 제 397 조 2(회사기회유용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
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
 2. 상법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 등 상법 제 398 조에 규정된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한 경우

제 12 조(질서유지)

- ① 이사회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그 명을

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② 이사회는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第 4 章 附議事項

제 13 조(부의사항)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1)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
- 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- 3) 주주총회 부의의안
 - 정관 변경의 결정
 -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자본감소의 결의
 - 영업의 중요한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, 양수, 임대 등
 - 회사의 합병, 해산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-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및 취소의 결정
 -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
 - 이사 및 감사의 보수
 - 현금·주식·현물배당의 결의
 -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
-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총회 부의의안

2. 주식에 관한 사항

- 1)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
- 2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3) 주권의 액면분할, 병합

3. 사채에 관한 사항

- 1) 일반사채의 발행
- 2) 전환사채의 발행
- 3) 교환사채의 발행
- 4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5) 신종사채의 발행

4. 기타 경영사항

- 1) 대표이사의 임면
- 2) 이사의 직위, 직무의 위촉 및 해촉
- 3) 공동대표의 결정
- 4) 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 회사 간의 거래
- 5) 이사의 경업, 동종업종 타사의 임원의 겸임의 승인
- 6) 이사회 규정의 개·폐
- 7) 자산재평가 실시
- 8) 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9) 내부거래 등의 승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, 동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동법

제 11 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내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

- 10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
- 자기자본의 5% 이상 차입에 관한 사항
 - 준비금의 자본전입
 - 중요한 소송의 제기과 화해에 관한 사항
 -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
 - 자기자본의 2.5% 또는 100 억원 이상의 타 법인 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
 - 자기자본의 1.0% 또는 50 억원 이상의 해외직접 투자
 -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10% 이상 고정자산 취득, 처분에 관한 결정
 - 자기자본의 1.0% 또는 50 억원 이상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
 - 해외법인의 설립 및 청산
 - 지점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
제 14 조(보고사항)

이사회는 별도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第5章 委任

제 15 조(위 임)

이사회는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경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 할 수 있다.

제 16 조(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대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구성한다.
- ③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- ④ 경영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심의대상,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.

第6章 其他事項

제 17 조(의사록)

이사회 의사경과요령 및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18 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는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이사회사무 전반을 관리 한다.

제 19 조(규정의 개·폐)

이 규정의 개·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다.

附則(2012.10.8)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附則(2021.2.16)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附則(2022.12.29)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